

大田直轄市交通專門研究室運營條例案

審 議 番 號	477
------------	-----

提出年月日 : 1994. 10.

提 出 者: 大田直轄市長

1. 提 案 理 由

自動車の急速한 増加로 우리市の 交通問題가 深化되고 있고, 앞으로 西南部圈開發, 都市鐵道建設, 新交通手段開發의 必要性, 駐車難 등 專門的인 研究, 檢討가 山積해 있으나 交通에 대한 專門要員이 없어 能動的인 對處가 困難하므로 交通專門職公務員을 採用하여 交通問題를 能動的으로 解消해 나가하고자 함.

2. 主 要 骨 子

- 가. 交通專門研究室 設置 運營 (案 第1條, 第2條)
- 나. 3人以內的 地方專門職 公務員 採用 (案 第3條)
- 다. 交通問題의 解決을 위한 交通政策開發 및 T.S.M事業 등 支援 (案 第4條, 第5條)

3. 參 考 事 項

- 가. 서울特別市 : 交通管理事業所 設置 (市 12名, 自治區 44名)
- 나. 釜山, 仁川, 大邱, 光州 : 條例制定 推進中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 (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대전직할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및 연구, 교통종합정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전직할시 교통전문연구실(이하“연구실”이라 한다)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연구실은 교통관광국내에 둔다

제3조(구성) ①연구실은 3인이내의 지방전문직공무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교통관련 자격증소지자로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채용한다.

제4조(연구원의 직무) 연구원은 대전직할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유업무

가. 중·장기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계획 수립

나. 분야별 교통정책연구

다. 교통체계개선(T.S.M)연구

라.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마. 교통안전대책연구

2. 지원업무

가.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나. 자치구의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다. 아파트 입지 심의 검토

라. 실과 협조요구 업무

3. 기타업무

가. 조사·연구토록 지시된 사항

나. 현안업무중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

제5조(지원) ①교통관광국장은 연구·조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
과 장비 및 인력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관계부서의 장은 연구실의 조사·연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연구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 복무 및 보수결정
사항 등은 대전직할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大田直轄市交通專門研究室運營條例案

審 查 報 告

1994. 12. 27.

産業建設 委員會

I.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4. 12. 20.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4. 12. 22.

다. 上 程 日 字 : 第3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5次 産業建設委員會 (1994. 12. 26)
上程, 質疑, 審查, 議決.

II.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가. 提 案 理 由

自動車の 急速한 增加로 우리市の 交通問題가 深化되고 있고, 앞으로 西南部圈開發, 都市鐵道建設, 新交通手段開發의 必要性, 駐車難등 專門的인 研究·檢討가 山積해 있으나 交通에 대한 專門要員이 없어 能動的인 對處가 困難하므로 交通專門職公務員을 採用하여 交通問題를 能動的으로 解消해 나가고자 함.

나. 主 要 骨 子

가. 交通專門研究室 設置 運營 (案 第1條, 第2條)

나. 3人 以內의 地方專門職 公務員 採用 (案 第3條)

다. 交通問題의 解決을 위한 交通政策開發 및 T.S.M事業등 支援
(案 第4條, 第5條)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류 기 현)

가. 提出理由 및 主要骨子 : 앞의 內容과 같음.

나. 檢討意見

○ 本 條例 制定案은 날로 深化되어 가고 있는 都心地 交通難의 狀況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交通行政

分野에 專門人力을 確保, 交通專門研究室을 設置 運營코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

○ 條例案의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交通政策開發 및 研究, 交通綜合情報 管理體系 構築을 위하여 交通專門研究室을 交通觀光局에 두고 研究室은 3人以內的 地方

專門職 公務員으로 構成하며, 研究員은 交通關聯資格證 所得者로서 地方專門職 公務員 採用 資格基準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市長이 採用하는 것으로 規定되어 있음.

- 研究員의 主要 職務는 中·長期 交通政策 開發 및 交通計劃의 樹立, 交通體系改善 (TSM), 交通現況調查 및 分析과 支援業務

로 交通影響評價 事前檢討, 自治區의 交通計劃樹立 및 施行支援, 아파트 立地 審議檢討등이 主要 職務임.

○ 全般的으로 制定條例案의 主要 內容을 檢討해 볼때 都市行政에서 尙상 問題點으로 提起되고 있는 交通難 解消를 위하여 莫大

한 財源을 投資하여 施設을 擴充하는 것도 重要하다 하겠으나 이에 못지 않게 交通問題 解決을 위한 效率的인 研究가 推進되

도록 方案을 講究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大田의 경우 앞으로 西南部圈 開發, 都市地下鐵 建設, 川邊 高速道路 建設, 都心地

駐車難등 交通 問題는 많은 研究와 課題를 안고 있는 實情으로써 이러한 交通 問題에 效率的으로 對應할수 있는 專門要員이

아직도 確保되어 있지 않아 交通行政分野의 專門人力 確保가 現實的으로 必要한 時點에 있다고 判斷이 되는 바, 交通專門研究室을 設置 運營토록 함이 妥當할 것으로 判斷이 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없 음

5. 討論 要 旨

없 음

6. 小委員會 審査內容

없 음

7. 少數意見의 要旨

없 음

8. 審 查 結 果

原 案 可 決

9. 其 他 必 要 的 事 項

없 음

大田直轄市交通專門研究室運營條例案에對한修正(案)

審 議 番 號	477
------------	-----

提出年月日：1994. 12.

提 出 者：大田直轄市長

1. 修 正 理 由

大田直轄市 交通專門研究室을 1995年 1月 1日부터 設置運營할 計劃였으나, 다소 늦추어 신축적으로 施行코자 大田直轄市 交通專門研究室運營條例施行을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도록 修正하고자 하는것임

2. 主 要 骨 子

大田直轄市 交通專門研究室運營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기로 함
(부칙)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중 “1995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에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